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8-09937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김예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5길 30 705호
피 청 구 인 기획재정부장관
심 판 청 구 일 2018. 5. 29.

주 문

피청구인은 2018. 5.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5. 2. 피청구인에게 '2015. 1. 1.부터 2018. 4. 30.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해당부처 공무원의 범죄사실통보서 통계자료-범죄사실 내역(죄목), 통보받은 날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8.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관련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의 조치 내용에 국한된 최소의 정보이므로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이 특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사건 접수 사실과 행정처리에 대한 정보로 공개하더라도 개인이 특정될 수 없는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5. 2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8.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결함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8758 판결 등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실 내역, 통보받은 날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해당 관련자들의 성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범죄사실, 징계처분결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일부 관련자들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직자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일부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